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11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921호

붙임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21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9.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8.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p> <p>9.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